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943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4 · 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호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쫓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4·19혁명을 국경일로 지정

개정안은 4·19혁명일(4월 19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2조(국경일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4·19혁명일: 4월 19일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개별 법률(예 : 「소방기본법」 소방의 날, 11월 9일), 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국경일 및 기념일로 지정될 경우, 국가의 경사로운 날 또는 국가적 기념일로 지위가 격상되며, 정부에서 기념행사, 포상, 예산지원, 부처협조 등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체계>

구분	국경일	기념일	공휴일
지정 현황	5개(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55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15일(일요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제외)
		135개(개별 법률)	
근거	「국경일에 관한 법률」	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②개별 법률(「소방기본법」, 「약사법」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

* 한글날은 기념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6년부터 국경일로 승격됨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하는 날로서, 개국·건국 등 국기(國基)와 관련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1949. 10. 1), 한글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드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에 국가 기념일로 규정되어있는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 규정하였음(2005. 12. 29.).¹⁾

‘4·19혁명기념일’은 4·19혁명정신을 기리고, 4·19 희생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73년부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로 제정·운영되고 있음.²⁾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도 3·1운동과 함께 4·19혁명의 민주이념은

1) 「국경일에관한법률」(법률 제53호, 1949.10.1. 제정), 「국경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7771호, 200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참조.

2) ’73년 당시에는 기념일 명칭이 ‘4·19의거기념일’이었으나 ’94.12.31. 현재 명칭인 ‘4·19혁명기념일’로 변경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4·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승격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국경일은 민족자존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의 화합·단결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날로써 4·19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승격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경일의 의의, 성격, 목적 등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 다른 국경일과 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경일 행사 관련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8억원(연평균 3억 6,000만원)으로 추계되었음.³⁾

행정안전부는 4.19혁명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1절, 광복절, 제헌절 등과 같이 국기(國基)와 깊은 관련성 여부, 역사적 의의, 다른 민주화운동 기념일과의 형평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경일 지정에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국경일의 종류에 4·19혁명일 추가(안 제2조제2호 신설)	360	360	360	360	360	1,800	360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따른 국민통합 및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7